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등〉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81호)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31호)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0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개 요	1
【문금주의원안】	1
【김영진의원안】	2
【우재준의원안】	4
II. 검토의견	5
1.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5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재개 등	9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19

I. 개 요

【문금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12. 2.

다. 회 부 일 : 2025.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김영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9.

다. 회 부 일 : 2025. 12. 10.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 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

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우재준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6.

다. 회 부 일 : 2025. 1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김영진의원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¹⁾(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3(공공기관에 대한 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부 출 자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 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인 ‘등록’에 해당하고, 정부 출자로 인해 출자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²⁾.

개정안은 정부 출자로 인한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자본을 출자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김영진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영진의원안
공공기관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신설 (§85의3)	감면 대상자	<신 설>	정부의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
	감면 대상		자본금 변경 등기
	감면 내용		등록면허세 100%
	일몰 기한		-

정부의 출자가 공적 목적에 따른 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지방재정 부담 여부, 등록면허세의 법적 성격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모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였으나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당 특례가 삭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⁴⁾.

3) 등록면허세는 행정 수수료적 성격이 있어 최근 이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는 추세로, 농·어업법인, 창소중소기업 설립등기('20년), 자경농민 도로점용('21년), 지방농수산물공사 법인등기('22년), 어업권·양식업권 면허('25년) 등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었음.

4)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게 현물출자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한 바 있음⁵⁾.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등록면허세는 행정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이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는 추세라는 점,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 간의 조세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세면제 확대 요구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또한 과세형평성, 지방재정 부담 증가 여부 등의 이유로 감면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당시에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재개 등(문금 주의원안)

개정안은 ① 2017년 12월 31일자로 감면이 종료된 축사용지⁶⁾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재개하고, ②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 ----- ----- ----- ----- -----202 9년 12월 31일----- ----- ----- ----- ----- -----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이는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함

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 ④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u>2028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0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⁷⁾.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축사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였는데, 동 감면 특례는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되었음. 개정안은 동 감면을 재개하면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문금주의원안
축사용지 양도 시 감면 (§130)	감면 대상자	축사용지 양도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소득	
	감면 내용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100%	
	일몰 기한	~2017년	~2029년

7)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법률 제21223호)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여 축사
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
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
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
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3
장(지방소득세 특례)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
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
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⁸⁾, 「조세특례제한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
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
과세를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
은 소득세의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
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
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

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2.23.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감면되고 있음.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를 공제·감면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이미 연장되어 개정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67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⁹⁾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법인등>

구분	내 용
①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업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은 조합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

9)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¹⁰⁾과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9%의 세율(20억 초과분은 15%)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 >

$$\text{법인세액} = \frac{(\text{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pm \text{손금불산입액}) \times 9\% \text{ (20억 초과분 15\%)}}{\text{과세표준} \quad \text{세율}}$$

이는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¹¹⁾ 및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로,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의 재원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¹²⁾

구체적으로, 조합법인등은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10) “당기순이익”은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정기간(해당기간)의 순이익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법상 수익·비용차이를 가감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 산출됨(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조세』(국회예산정책처) 등 참조).

11)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55조는 각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세무조정)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text{법인세액} = \frac{[(\text{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pm \text{세무조정}) - (\text{이월결손금} + \text{비과세소득} + \text{소득공제})] \times \text{세율}}{\text{과세표준}}$$

12)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025, p214.

<일반법인 및 조합법인등에 대한 과세표준 비교>

구분	과세표준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조합법인등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 시행령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기부금, 대손금 등)

<일반법인 및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과세표준	일반법인		과세표준	조합법인등	
	법인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2억 이하	9%	0.9%	20억 이하	9%	0.9%
2억 초과~200억 이하	19%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	21%	2.1%	20억 초과	15%	1.5%
3,000억 초과	24%	2.4%			

개정안은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은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 제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문금주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주철현의원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67)	감면 대상자	조합법인등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조합법인등 <u>법인지방소득세</u>	
	감면 내용	<u>법인세 세율*</u> 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결정 * 과세표준 20억 이하 9%, 20억 초과 15%	
	일몰 기한	~2028년	~2029년

다만,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과세표준 중 20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1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2.23. 공포되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12.31. 공포되어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연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동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에 발의되어 이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172억원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10%인 417억원으로 추정됨.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현황(제167조)>

(단위: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법인세	4,230	5,113	3,173	2,731	2,791
법인지방소득세	423	511.3	317.3	273.1	279.1

※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였으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우재준의원안)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개인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9조의2(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

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

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

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

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

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

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

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

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

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

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5조제1항·제2항,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하여야 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59조까지 및 제159조의2-----

-----.

⑤ -----

-----제159조까지 및 제159조의2-----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생 략)

② 「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결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

159조까지 및 제159조의2-----

③ -----

-----제159조까지 및 제159조의2

-----.

④ -----

제1
59조까지 및 제159조의2

1. ~ 3. (현행과 같음)

[illegible]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② · ③ (생략)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제149조, 제159조 및 제159조의2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라 함)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¹⁴⁾ 진흥과

14) 「물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물기업¹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¹⁶⁾.

이에 근거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국내 물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라. 「수도법」 제3조제35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15) 「물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물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 3. 물기업 집적단지
-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개요〉

□ 설립개요

- (조성목적) 물산업 진흥 및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시설·진흥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
- (조성과정) '14기본계획 수립→'181기 위탁운영기관 선정→'19준공·운영개시
- (운영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액	8,219	18,040	22,912	25,385	26,272	29,709	27,197
집행액 (실집행)	8,219 (7,515)	18,040 (13,411)	22,912 (21,263)	25,385 (24,377)	26,212 (25,230)	29,650 (29,077)	9,990

□ 시설개요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 (사업비·면적) 사업비 2,409억원, 면적 145,000㎡
- (주요시설) 실증화시설 실증플랜트·종합관망시험시설, 진흥시설 물융합연구센터·위터캠퍼스

□ 운영개요

- (운영목적)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인프라·조직 및 예산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성장 지원
 - (간접지원) 국내 최대 물기업 특화 실증화시설 및 환경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물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지원
 - (직접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통해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국내 물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해외진출을 지원
- * (국내) 창업→기술개발→실증화→인·검증→사업화→판로 ⇨ (해외) 실증화→인검증→시장개척→판로

※자료: 기후환경에너지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우재준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우재준의원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감면 신설 (§159의2)	감면 대상자	<신 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
	감면 내용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일몰 기한		<u>~2027년</u>

물산업은 수도시설, 하수도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산업을 진흥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동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할 입법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의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¹⁷⁾는 「소득세법」 또는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현행법 제3장(지방소득세 특례)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즉,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306호,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해당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¹⁸⁾, 이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¹⁹⁾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를 통해 적용하고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를 공제·감면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어 개정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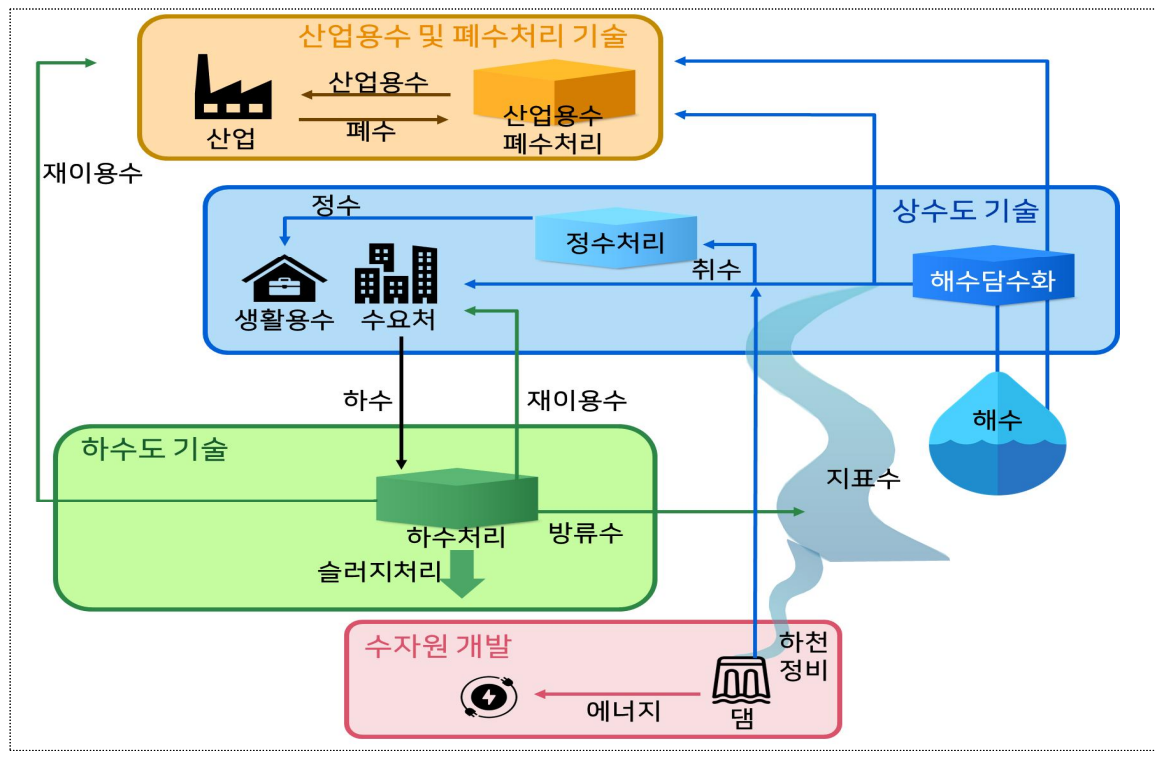
물산업 개요

□ (정의) 물순환 전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 수자원 순환 Cycle(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사후처리)과 관련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
 -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 사업, 수문조사기술·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시설 관련 사업 등

구분	수자원 개발	수자원 공급·이용	사후처리(수질보전)
건설	댐, 지하수 개발 하천 정비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취수, 도수관 건설 정수장, 급수망 건설 (소)수력발전 건설	하·폐수처리장 건설 하·폐수 관거 건설
제조	댐, 담수화, 지하수 개발 관련 기자재	정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도수, 배수관 등 기자재 먹는샘물, 정수기 등	하·폐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하·폐수 관거 기자재
운영· 관리	수자원시설 보호·운영 수문조사 등	정수장 운영·관리 급수 관로 등 유지·관리	하·폐수처리장 운영·관리 하·폐수 관거 유지·관리

<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측면에서의 물순환계 >



□ 물관리기술, 시장 수요에 따라 형성된 기업 생태계

- (물관리기술) 수량·수질·수생태계의 균형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 물의 공급·이용, 순환과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 (물시장) 공공 인프라 및 민간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으로 정부 투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제품 및 서비스 교환
- (물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물시장에 공급하는 기업群으로 건설 - 운영·관리 - 제품 제조 - 서비스 등으로 업종 세분화

< 물관리기술, 물시장, 물산업의 관계 >



1) 물시장 분류(Global Water Intelligence), 2) 물산업 실태조사 업종 분류

※자료: 기후환경에너지부